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확대〉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574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확대	2
※ 참고자료	6
1.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요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6.
3. 회부연월일 : 2025.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의 영세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5년으로 규정되어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기간 확대(안 제7조제5항)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부터 <u>5년</u> 으로 한다.	⑤ ----- ----- <u>5년</u> 이 상-----.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1)에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소상공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중 1년 6개월 이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품목
3.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중 1년 6개월 이내에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때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천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종·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해당 업종·품목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진행된 경우 그 경과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업종 내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서는 소상공인단체가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1년 6개월 이내에 합의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②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이후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업종·품목, ③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1년 6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1회 3개월 내 연장 가능)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고시일부터 5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을 ‘고시일부터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임.

이는 소상공인의 영세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다시 지정을 신청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후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추천, 심의, 지정·고시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됨.

다만,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는 생계형적합업종 제도의 정책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최소한 5년 단위의 재지정 검토가 필요하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없이 특정 업종을 5년 이상 장기간 보호하는 경우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로 지정된 5년 후, 재지정을 통해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구조로 제도가 운영²⁾되고 있어 소상공인 보호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업종간 경쟁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함께 대기업 등의 시장진입 제한 강화로 인한 해당 업종의 경쟁력 저하 가능성, 5년 주기의 재지정 검토를 통한 정책효과 반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서점업, LPG연료 소매업, 간장·된장 등 제조업, 두부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최초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되었음.

문 의 처
02) 6788-5463

【참고자료】

1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 **(제도개요)** 중기부장관이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중견기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
 - * 위반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벌칙,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
- ☐ **(근거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18.6.12제정, '18.12.13시행)
- ☐ **(신청대상)** ①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기간 만료 1년 6개월 이내, ②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만료 1년 6개월 이내, ③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으로 소상공인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 ☐ **(규제대상)** 대기업등(중견기업 포함)
- ☐ **(지정기간)** 5년
- ☐ **(처리절차)** 소상공인단체 신청 → 실태조사·의견수렴 /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 심의족 심의·의결(중기부 內) → 중기부 지정·고시 → 위반 시 벌칙 부과
 - * **(심의위원회)**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계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위원(각 2명)과, 공익위원 5명의 민간위원(총 15명)으로 구성
- ☐ **(심의기준)** 업종내 소상공인 비율 및 영세성 및 취약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 영향 등 종합 고려
- ☐ **(대기업등 진출제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며, 소비자후생·관련산업 영향을 고려해 예외사항 승인·적용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유효 업종·품목(10개) >

연번	업종 및 품목	지정기간	연번	업종 및 품목	지정기간
1	서점업	'19.10.18. ~ '24.10.17. '24.10.18. ~ '29.10.17.	6	간장 제조업	'20.01.01.~'24.12.31. '25.02.01.~'30.01.31.
2	LPG연료 소매업	'19.11.20. ~ '24.11.19. '24.11.20. ~ '29.11.19.	7	된장 제조업	
3	국수 제조업	'21.01.01. ~ '25.12.31.	8	고추장 제조업	
4	냉면 제조업	'21.01.01. ~ '25.12.31.	9	청국장 제조업	
5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21.09.16. ~ '26.09.15.	10	두부 제조업	'20.01.01.~'24.12.31. '25.03.01.~'30.02.28.